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17,533,865	30,526,016
일반회계	944,048,171	28,321,445
특별회계	73,485,694	2,204,571
공기업특별회계	63,282,472	1,898,474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1,692,209	650,766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1,590,263	1,247,708
기타특별회계	10,203,222	306,09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	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888,376	56,651
의료보호특별회계	3,626,680	108,800
수질개선특별회계	541,872	16,256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10,794	21,324
주택사업특별회계	457,270	13,718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	2,976,730	89,30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 14,679,315 "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